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10.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배 경 택		044-202-3730	
해외입국관리팀	담 당 자	하 미 희	지 등	044-202-37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팀 장	신 일 철	전 화	044-205-6515	
자가격리상황팀	담 당 자	윤 성 희		044-205-6519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우 기		044-202-3250	
취약시설지원팀	담 당 자	최 환		044-202-3254	
보건복지부	과 장	최 종 희		044-202-3280	
장애인정책과	담 당 자	백 영 하		044-202-328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 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하였다.











- 또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되었지만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 신문고의 신고 접수도 활용하여 불시점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내일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행되는 첫 주말이라며, 방역수칙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행 상황 점검과 계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1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평균 해외 입국자 수 및 확진자 수 >

(단위: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일
	1 E	り担	4.1~12	4.13~4.30	Ja	0 a	7 2 62
ō	해외 입국자 수	11,462	5,691	3,787	3,620	3,955	3,659
	내국인	8,555	4,359	2,791	2,435	2,558	1,889
	외국인	2,908	1,332	996	1,185	1,397	1,760
해외입국 확진자 수		21	30	9	6	11	20

-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어제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 * (예외 사유)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이나**,
 - * 7월 8일 기준 총 39,703명(국내 7,344명, 해외 32,359명)
 -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 7월 8일 기준 무단이탈자 총 661건 660명 적발(2.19 ~ 7.8)











-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파단에 따라,
 -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공항이동 시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 관리
-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2.27.~)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 * 현재 15개 시설 중 9개 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 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휴관 권고 중
 -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

운영 중 (6개)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5.6), 노숙인이용시설(5.11), 자활사업(5.18), 장애인일자리(5.20)			
		정신재활시설(6.22)	※ 어린이집(6.1) (수도권 등 휴원 연장)		
휴관 권고 중	운영 재개 (7개, 7.20~)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	ž		
(9 ⁷ H)	휴관 권고 (2개)	(아동)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긴급	급돌봄 실시 중)		

○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 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u>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u> 운영 등
- ▶ (2단계) 운영재개 <u>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u>,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u>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u> 등
-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 → '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가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 단,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한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 □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 □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7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 둘째, 돌봄과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중중ㆍ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1,187개소, ▲PC방 394개소 등 40개 분야 총 22,548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2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77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PC방 68개소 등 1,009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3개반, 66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1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7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2,4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2명이 증가하였다.
 - 운동, 자녀하원,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 을 확인하여 1명은 고발하였고,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6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9일) 입소 195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